

자동차내장제부품제조업에서 발생한 폐호산구증가증

성별 남 나이 55세 직종 사출/성형직 직업관련성 낮음

1 개 요

안 ○ ○ (55, 남)은 38세때인 1986.6.부터 17년 간 D(주)에서 근무하다가 2003.4.10. 기침, 호흡곤란증상이 있어 2003.10.18. I병원에서 폐호산구 증가증으로 진단받았고 현재 호전되었다.

2 작업환경

안 ○ ○은 입사 후 1년 간 도장반에서 에어크리이너에 분체 및 에나멜 도장을 스프레이건으로 도포하는 작업을 하였다. 이후 1년 간 커버조립작업에서 작업원단에 스프레이건으로 본드를 도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, 이때 상기 근로자는 머리가 어지럽고메스꺼운 증상을 자주 느꼈다고 하였고 현재 외주업체 근로자 3명이 하고 있다. 11년 간 도어트리밍 성형작업은 하드보드기판에 PVC수지 및 PP수지로 사출가공후 연마작업을 하였는데, 이때 연마시 분진이 많이 날렸다. 또 당시 유리섬유로 되어 있는 카페트의 헤드라인을 성형가공하는 업무로 250톤 이상의 유압프레스기에 온도가250~300℃로 카페트를 압축하는 작업이 있었다. 이때 노출된 유리섬유로 인하여 목,얼굴, 팔 등 노출부위가 매우 가렵고 따가운 증상을 느꼈다고 하였다. 당시 상기 사업장에서 차량 천장재로 유리섬유를 1996년까지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레진펠트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. 접착부스에 환기설비가 있었으나 외주업체의 접착부스는 매우지저분하고 본드가 널려 있는 점을 보아 작업중 근로자가 유기용제에 노출될 가능성

이 크다고 생각된다.

3 의학적 소견

2003.4.10. 기침 및 호흡증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40일이 지난 시점에서 혈액, 객담 및 기관지조직검사가 실시되어 이 시점에서 호산구증가증을 확인하기는 어렵다. 그러 나 상기 근로자가 2003.4.이후 3달 간의 기침, 호흡곤란증상이 있었고 2003.5. 흉부 전산화단층촬영검사상 우상엽의 종괴소견을 보였고 2개월 뒤인 2003.7. 실시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검사상 우상엽의 결절성 병변소견이 없어진 소견을 보였다. 또한 2003.4.부터 3개월 간 특별한 치료(스테로이드 치료 등)없이 증상이 호전이 된 점을 비롯한 임상적인 경과를 고려할 때 상기 근로자의 증상과 관련된 질병을 폐호산구증 가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.

4 결 론

안 이 이의 폐호산구증가증은

- ① 근로자 안기철은 폐호산구 증가증으로 확진되었는데,
- ② 상기 근로자는 흡연력이 없고 PVC 수지 분진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이 물질 들이 폐호산구증가증을 일으킨다는 문헌보고는 없으며,
- ③ 이 물질들에 폐호산구 증가증을 유발하는 기생충, 약물, 진균, 알루미늄, 니켈 등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,

근로자 안 ㅇㅇ의 폐호산구증가증은 작업 중 노출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.